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1166호)

예비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6. 3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9. 7. 2
다. 상정·의결일 자 : 2009. 7. 13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입·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보고서
- 재무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총 세입예산현액은 3천 630억 9천 575만 8천원이며
 - 징수 결정액은 3천 774억 1천 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 실제 수납액은 3천 727억 7천 451만 1천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8.8%가 징수되었으며
 - 미수납액은 46억 3천 948만 8천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 회계별 세입 내용을 보면
 -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3천 571억 3천 360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3천 527억 7천 703만 6천원,
 - 상수도사업 외 12개 특별회계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202억 8천 39만 8천원이며, 수납액은 199억 9천 747만 5천원입니다.
-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 예산현액 3천 630억 9천 575만 8천원 중
 - 지출액은 2천 554억 1천 852만원으로 집행율이 70.3%이며, 이월액은 872억 7천 973만 8천원이고 집행 잔액이 196억 881만 4천원 것입니다.
- 계속비는 거류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94억 3천 350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4억 2천 759만 6천원으로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 광역살포기 구입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등에 3억 6천 392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189억 4천 425만원이고,

-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 토지 21,864필지에 850억 1천 961만 9천 원
 - 건물 213동에 879억 772만 4천 원,
 - 공작물 791점에 93억 7천 655만 6천 원,
 - 선박 2척에 4억 1천 4백만원 등
 - 총 1천 829억 4천 228만 7천 원입니다.
-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 총 31종 378건에 59억 4천 233만 9천 원이며
 - 취득은 74건 6억 726만원이 증가한 반면
 - 처분 등으로 22건 1억 8천 726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 결산 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 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 세수행정은 적정한가
 - 사업목적이나 사업효과성의 달성여부
 - 세출예산의 무리한 자체절감으로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거나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된 것은 없는지
 - 예산이 편성된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비에 사용된 것은 없는지
 -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없는지
 -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 요지

- 문 :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비는 사업의 성질상 예비비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하고 계상된 금액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지 않나 ?
- 답 :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음.
- 문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의 승인권자인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임.
- 답 : 승인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 되도록 노력하겠음.
- 문 : 결산서작성은 재무과장이 총괄하는 것이나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집행에 있어서는 본청 예산은 재무과장이,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는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산안 심사시 재무·기획·직속기관·사업소장이 참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답 : 개선하도록 하겠음.
- 문 :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189억 4천 425만원인 것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부담은 되지 않는지, 타시군과 비교하면 어느 수준인지?
- 답 : 우리군의 재정 규모상 큰 부담은 되지 않으며, 경남도내 시군과 비교하면 채무가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 2009. 7. 13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 제134조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51조 (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